


# 기안용지

H.P.I.P.  
행정비서

분류기호 문서번호	문화 35300-44	(전화: 731-6187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	장 No 150
수신처 보존기간			
시정일자	'89. 9.		
부시 장		협조 기관  법무담당관	문서 번호
단 장	기획관 <i>대략</i>		
문화 담당관	<i>jm</i>		
기안책임자	나승주 <i>NSJ</i>		
징 유 수 신 삼 조	각안참조	방 침 명 의 425호	방 침 명 의 1234호
제 목	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고시		
<b>제 1 안 내부결재</b>			
1. '89. 8. 23 개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			
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.			
가. 지정내용 :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목록			
0. 지정일자 : '89. 9. 11			
문 화 재		보 호 구 역	
종 별	지정번호	명칭	소재지
면적	소유자		
유형문화재	제70호	충숙이공	노원구 아계동 32
		신도비	
			1.213㎡ 백진이씨
			중중

문 화 제			보 호 구 역		
종 별	지정번호	명 칭	소 제 지	면 적	소유자
유형문화제	제70호	춘추이궁 신묘비	노원구 아계동 32-1	38 m <sup>2</sup>	백진이씨 중종
			" 33	864 m <sup>2</sup>	"
			" 46	532 m <sup>2</sup>	"
			" 47	59 m <sup>2</sup>	"
			" 산16-1	8,926 m <sup>2</sup>	"
			" 22-1	146 m <sup>2</sup>	노원구
			" 46-1	359 m <sup>2</sup>	"
			" 40-1	110 m <sup>2</sup>	"
		계	9 면 시	12,247 m <sup>2</sup>	
나. 근거법규 : 문화재보호법 제 8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					
제9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에 지정 함.					
첨부 고시(안) 1부. 끝.					
제 2 안					
수신 문화재관리국장					
참조 문화재1과장					

제목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동보

1. '89. 8. 23 개최한 서울특별시 문화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방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였기 보고합니다.

가. 지정내용 : 제1안 "가"항 이기 시행. 끝.

제 3 안

수신 노원구청장

참조 총무과장

제목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동보

1. 문화재보호법 제 8조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 9조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였음을 통보하니,

2. 관련 해당과및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관계공부를 기속 정리할 것이며

향후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.

가. 지정내용 : 제 1안 "가"항 이기 시행. 끝.

제 4 안

수신 수신처 참조 <sup>240</sup>

발신 문화담당관

제목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동보

1. 문화재 보호법 제 8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9조 규정의거

지방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고시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입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지정내용 : 제 1안 "가"항 이기시행. 끝.

수신처 세정과, 도시계획과, 시설계획과, 도시개발과, 제개발과, 건축지도과,

공원과, 녹지과

제 5 안

수신 총무처장관

상조 법무담당관

제목 관보게제 의뢰

1. 별첨 고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였기 재산  
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자 관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고시문 2부. 끝.

제 6 안

수신 공보관

발신 문화담당관

제목 시보 게재 의뢰

2534

1. 별첨 고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였기 제산

소유자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자 시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고시문 2부. 끝.

제 7 안

수신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31 벽진이씨 종중회장 이종은

제목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통보

1. 귀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70호 충숙이공  
선도비 보호구역을 문화재 보호법 제8조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9조 규정  
에 의거 지정하였기 알려드립니다.

가. 지정내용 : 제 1안 "가" 항 이기 시행. 끝.

2535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 고시 제425호

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 구역 지정

문화재 보호법 제 8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1989. 9.

서울특별시 장

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목록

문 화 제			보 호 구 역			
종 별	지정번호	문화재명	소재지	면적	소유자	
유형문화재	70 호	총숙이공 산도비	노원구 아계동 32	1,213 m <sup>2</sup>	벽진이비종중	
			" 32-1	38 m <sup>2</sup>		
			" 33	864 m <sup>2</sup>		
			" 46	532 m <sup>2</sup>		
			" 47	59 m <sup>2</sup>		
			" 산16-1	8,926 m <sup>2</sup>		
			" 22-1	146 m <sup>2</sup>		노원구
			" 46-1	359 m <sup>2</sup>		
			" 40-1	110 m <sup>2</sup>		
					계	12,247 m <sup>2</sup>
		2536				

서울시 有形文化財 70号 (忠肅李公神道碑)

노원구 하계동

家中所有土地  
境界

공천용지 개발제한구역

보통구역대상  
(3,705평)

신묘비

洞

2537

